



KOLAS-R-007 : 2022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또는 메디컬시험기관의 KOLAS 공인기관 인정에 요구되는 숙련도시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 제2조(용어의 정의),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 “설정값(assigned value)”이란 숙련도시험 아이템의 특정량에 귀속된 값을 말한다.
2. “시험기관간 비교(interlaboratory comparison)”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시험기관이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시험 아이템에 대하여 시험을 구성, 수행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측정심사(measurement audit)”란 기준시료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시험, 측정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 또는 교정기관과 국가측정표준기관 사이의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비교하는 시험을 말한다.
4.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 RM)”이란 측정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5.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 CRM)”이란 하나 이상의 명시된 특성에 대해 특성값과 불확도 및 측정소급성을 제공하는 표준물질인증서를 동반하여, 측정학적으로 유효한 절차에 의해 특성화된 표준물질을 말한다.
6. “참가자/기관(participant)”이란 숙련도시험 아이টে를 수령하거나,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 의한 검토를 위해 결과를 제출하는 시험기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 참가자는 검사기관이 될 수 있다.
7. “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ing)”이란 시험기관간 비교를 통하여 미리 확립된 기준에 대한 참가자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이 요령의 목적상, 숙련도 시험이라는 용어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며 다음이 포함된다.
 - 1) 정량적 스킴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숙련도시험 아이테의 측정량을 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경우
 - 2) 정성적 스킴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숙련도시험 아이테의 특성을 식별하거나 기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경우
 - 3) 순차적 스킴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숙련도시험 아이테이 시험 또는 측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배포되고 일정간격으로 운영기관에 회수되는 경우
 - 4) 동시적 스킴 : 숙련도시험 아이테이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동시 진행 시험 또는 측정을 위해 배포되는 경우
 - 5) 일회성 시험 : 숙련도시험 아이테를 단 1회만 제공받는 경우
 - 6) 연속적 스킴 : 숙련도시험 아이테를 정해진 간격으로 제공받는 경우
 - 7) 샘플링 : 후속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 8) 자료 변환과 해석 : 일련의 데이터나 다른 정보가 주어지거나,

그 정보에 대한 해석(혹은 다른 결과)을 진행하는 경우

- 나. 메디컬 분야의 일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은 해당 숙련도시험 스킴이나 좀 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외부품질평가(EQA)”(KS Q ISO/IEC 17043 부속서 A 참조) 관련 용어를 활용한다. 이 기준의 요건은 숙련도시험 정의를 만족하는 EQA 활동만을 포함한다.
8. “숙련도시험 아이템(proficiency test item)”이란 숙련도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샘플, 제품, 아티팩트(artefact), 표준물질, 장비, 측정표준 혹은 일련의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를 말한다.
9. “숙련도시험 운영기관(proficiency testing provider)”이란 KS Q ISO/IEC 17043에 따라 인정받은 KOLAS 공인기관으로서, 숙련도시험 스킴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숙련도시험 스킴(proficiency testing scheme)”이란 시험, 측정, 교정 또는 검사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라운드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숙련도시험을 말하며, 숙련도시험 스킴은 숙련도시험 아이টে에 대한 특정 유형의 시험, 교정, 검사 또는 여러번의 시험, 교정 또는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스킴’ 대신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11. “위탁기관(subcontractor)”이란 이 기준에서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고, 숙련도시험 스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기관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위탁계약” 용어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협력자(또는 협력기관)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인용표준 및 관련법령) 다음의 표준 및 법령은 이 요령에 인용됨으로써 이 요령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관련표준 및 법령은 최신본(추가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1. KS Q ISO/IEC 17043 적합성평가-숙련도시험 일반 요구사항
2. KS Q ISO/IEC 13528 시험소 간 비교 숙련도 시험용 통계적 방법
3. KS A ISO 170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4. KS A ISO Guide 35 표준물질-균질성 및 안정성의 평가와 특성화에 관한 가이드스
5.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장 숙련도시험 운영스킴 참가 요구사항 등

제4조(숙련도시험 운영시 고려사항) ① 숙련도시험 결과가 KOLAS 공인기관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기구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모두 스킴의 설계와 운영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참가기관과 평가사들이 숙련도 스킴에 대한 인정기구의 방침, 숙련도시험 스킴에서 성공적인 수행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그리고 숙련도시험의 불만족 결과에 대한 사후 방침 및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이 요령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인정기구와 평가사들은 이 요령에 의한 숙련도시험 등이 아닌 다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시험 데이터의 적합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

제5조(숙련도시험 참가 실적 및 주기) ① KOLAS 공인교정기관,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신청에 앞서 신청항목에 해당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 1의 대분류마다 1개 항목 이상 인정기구가 허용하는 숙련도시험에 참가하여 만족스

러운 결과를 얻은 실적을 인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정기관의 경우는 중분류별로 1개 항목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② KOLAS 공인교정기관,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은 인정분야의 측정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중분류별로 인정기구가 허용한 숙련도시험에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단,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의 경우는 대분류별로 1년에 2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사한 중분류(메디컬시험의 경우 대분류)에 대해서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숙련도시험을 1개로 통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숙련도시험 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기관의 원인이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책임자 또는 실무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④ 인정범위 확대 신청시는 중분류별 1개 항목 이상(단,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의 경우 대분류별로 1개 항목 이상) 인정기구가 허용하는 숙련도시험에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동일 중분류라도 소항목간 특성이 전혀 다른 경우(시험방법의 유사성이 없는 경우) 추가항목에 대한 별도의 숙련도시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규 또는 확대 신청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숙련도시험 참가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 정기검사의 일환으로 숙련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중분류 기준으로 2회 연속으로 불만족한 결과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에 따른 평가사 수당은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을 준용한다.

- 제6조(숙련도시험 참가 요건)** ① KOLAS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숙련도시험을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인정기구가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된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하는 국내외 숙련도시험을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인정분야의 숙련도시험이 없거나 인정의 신규 또는 확대 신청 시 적합한 숙련도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기구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별표 1의 제5호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운영절차에 따른다.
- ② 인정기구가 활용할 숙련도시험 스킴 중 기타 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은 KS Q ISO/IEC 17043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요구되고 준수여부는 심의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된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스킴의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메디컬시험분야로 인정받은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는 숙련도시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정도관리 실적은 KS Q ISO/IEC 17043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부합여부는 심의에 의해 확인한다.
- ④ 인정기구의 장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숙련도시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평가 시에 평가사로 하여금 기준시료를 신청기관에 제공하여 시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청기관의 시험(메디컬 시험 포함) 또는 교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⑤ 인정기구가 운영을 허용한 숙련도시험 스킴일 경우라도 운영절차, 수행도, 평가결과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숙련도시험 스킴 실적을 무효화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승인 여부를 위해 인정기구는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스킴 공지) ① 인정기구는 KOLAS 공인기관이 숙련도시험 참가를 계획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1에 해당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등을 공지할 수 있다.

② 숙련도시험 스킴에는 모든 기관이 참가할 수 있으나 시험시료의 제한 또는 스킴의 특수성, 스킴의 개발 및 운영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숙련도시험 등 참가) ①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신규기관 또는 KOLAS 공인기관은 숙련도시험 참가를 계획하고, 해당 숙련도시험 스킴을 운영하는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② 숙련도시험 스킴의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스킴에 따라 다양하며 스킴을 시작하기 전에 유형별로 규정된 비용이 참가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③ 숙련도시험 스킴 참가기관은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에서 공지한 참가 요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험결과를 해당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④ 참가기관들 사이에 순회되는 측정비교시험에서는 참가자들은 시료의 특성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⑤ 숙련도시험 참가기관들의 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는 것은 참가기관들의 책임이다.

⑥ 필요한 경우에 인정기구는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에서 운영하는 국제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제9조(불만족 결과 등의 시정조치) ① 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그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참가기관의 조치가 적절함을 확인할 때까지 참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불만족 결과에 대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시정조치 결과를 해당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의 적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파악된 잠재적인 원인

2. 시정조치 내용

3. 참여기관이 취한 시정조치가 효과적임을 확인한 증빙자료(예:표준 물질을 이용한 재시험 결과 등)

③ 해외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한 기관이 불만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기구에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효성 검증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검증계획을 대신 첨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이 실시되고 결과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참가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인정기구는 필요한 경우에 시정조치가 적절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얻거나 적합한 평가사와 함께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⑥ KOLAS 공인기관은 불만족 결과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시정 또는 예방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숙련도시험 수행도에 대한 자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의심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조치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참가기관의 차기 평가(재평가 또는 정기검사) 시 평가반이 확인하며, 해당 시정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유의 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10조(처분 등) ① 인정기구는 불만족한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에 대하여 해당 숙련도시험 스킴의 불만족 수행도 및 그 동안의 수행기록, 최근의 현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17조에 따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인정의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인정기구는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에 대한 공모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 참가기관의 관련된 항목(시정조치 대상 또는 해당 중분류)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숙련도 시험과 관련하여 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KOLAS 공인기관은 인정의 재개 이전에 해당 항목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수행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밀유지) ① 참가기관이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다만, 이 정보는 평가사 및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기구는 참가기관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시험결과를 활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③ 참가기관 그룹은 개선을 위한 논의 및 상호 지원의 목적으로 그룹 내에서 기밀유지의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제3장 KOLAS 공인기관의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 활용 등

제12조(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검토) ①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는 참가기관과 인정기구 모두에게 유용하다. 그러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결과를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의 제한이 있다. 특정 스킴에서 성공적인 수행도는 그 시험에 대한 능력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스킴의 비성공적인 수행도는 한 참가기관의 정상적인 능력상태에서 우연히 벗어난 경우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만으로 인정기구는 인정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② KOLAS 공인기관은 숙련도시험의 구성 및 설계에 대해 평가하여 그들의 수행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론을 유추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숙련도시험아이템의 출처 및 특성
2. 사용된 시험 방법들과 가능한 경우, 특정 방법들에 따른 결과의 설정
3. 숙련도시험의 구성(예를 들면, 통계적 모델, 반복 횟수, 측정할 파라미터, 수행방법 등)
4. 참가기관의 수행도를 평가하기 위해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이 사용한 기준

제13조(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활용) ① 인정기구는 참가기관의 숙련도시험 스킴을 수행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제9조제7항에 따른 의심 통보를 받은 참가기관은 차기 평가 시 평가반이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③ 숙련도시험 참가 기관은 차후 숙련도시험 스킴 계획 및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숙련도시험 스킴의 기술적 내용 또는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인정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요령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숙련도시험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제2021-0092호, 2021.04.08)에 의한 숙련도시험운영, 숙련도시험결과의 활용, KOLAS 공인기관의 조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별표 1]

인정기구에서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제6조 관련)

1.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2.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 유럽인정기구협력체(EA) 등 지역 시험기관 인정기구 협력체, 기타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ISO/IEC 17043에 부합한 숙련도시험 스킴
3.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MRA 체결 인정기구가 ISO/IEC 17043에 의해 인정(creditation)한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4. 기타 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으로 KS Q ISO/IEC 17043의 요건을 준수하고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5.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recognition)하는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비고: 제1호 ~ 제4호의 숙련도시험 스킴/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제5호의 스킴이 선정가능하며, 별표 2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운영절차에 따른다. 다만, 시험자간 비교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실무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별표 2]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운영절차(제6조 제1항 관련)

1. 방침

- 가.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별표 1의 제1호 ~ 제4호의 해당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실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신청 시 시험기관간 비교시험을 우선으로 한다.
- 나. 교정분야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숙련도시험 등) 제3항에 명시된 기관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신청 및 접수

- 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신청기관은 해당되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정기구에 제출한다.
- 1) 신청기관의 명칭, 법인 및 사업장 소재지 주소
 - 2) 시험기관(자)간 시험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관여하는 주관자 및 기타 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 3) 신청기관의 인정분야 및 인정신청 예정 분야
 - 4) 해당분야 숙련도시험 스킴의 참가 실적 및 계획
 - 5) 인정기구가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의 검토 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 불참가 사유
 - 6)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계획서
 - 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에 참여할 잠정적인 참가자 및 참가자 수
 - 나) 측정량 및 관련된 시험, 측정 또는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 다) 품목(item)의 제작, 저장 및 배포요건
 - 라) 품목의 균질성, 안정성 평가 방법 및 결과
 - 마) 해당되는 경우, 설정값의 근원 또는 결정방법, 측정소급성 및 측정불확도
 - 바) 참가자의 수행도 평가 방법 및 기준
 - 사) 스킴 참가요강
 - 아) 결과보고서(양식)
 - 7) 자체 개발한 시험방법인 경우,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토자료

나. 교정기관 측정심사 신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정기관 측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정기구에 제출한다.

다. 인정기구는 필요할 경우 가, 나항의 구비서류의 작성예시를 공고할 수 있다.

3.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계획 검토 및 승인통보

가. 인정기구는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가 접수되면, 신청사항의 적절성 검토 및 실시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인정기구는 계획 검토를 위한 신청스킴의 신청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승인을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 등으로 신청한 스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승인을 거부한다.

1) 별표 1의 제1호 ~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구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가 가능한 경우

2) 신청스킴이 KS Q ISO/IEC 17043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인정기구는 신청스킴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실시 승인이 결정되면 해당 스킴을 운영할 수 있는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을 선정(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하여, 해당기관 정보와 함께 승인공문을 신청기관 및 선정된 운영기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해당 스킴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 인정기구에서 숙련도시험 평가사로 하여금 입회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입회평가에 대한 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한다.

라. 운영기관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교정기관 측정심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4.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실시

가. 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스킴/프로그램의 실시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시험기관(자)간 비교 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운영기관은 측정심사, 시험자간 비교시험을 실시할 때 입회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기관간 비교시험의 경우에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수행도 검토
- 가. 운영기관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의 실시 결과를 통계적 방법에 의거 분석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결과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1) 참가기관의 결과보고서 등 단위사용의 적합성
 - 2) Raw data, 결과보고서 등 데이터작성 및 처리의 적합성
 - 3) 불확도 추정 보고서 등 불확도 평가 및 표현방법의 적합성
 - 4) 측정결과의 적합성(E_n 값 등)
 - 5) 종합의견
- 나. 운영기관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 후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참가기관 포함)에게 통보하고 최종결과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및 참가기관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가 불만족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신청기관 및 참가기관의 참가실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한 이후 신청기관(참가기관 포함)은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보고서를 해당 기관의 인정기구 평가(정기검사 포함)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운영기관이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은 해당 운영기관의 인정기구 평가(정기검사 포함) 시 평가한다.
6. 기밀유지
-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에 대한 기밀유지는 제11조에 따른다.

■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 측정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구분 | [] 시험기관간 비교시험 [] 시험자간 비교시험 [] 측정심사 | | |
| 신청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
| | 법인주소 | | |
| | 사업장 소재지 주소 | | |
| 신청자 | 성명 | 부서명 | |
| | 직위 |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 및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6조에 의거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분야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및 계획(3년주기) 종분류별 숙련도시험 체크리스트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계획서 참가요강 균질성 및 안정성 시험결과 신청기관의 인정분야(전체) 및 인정신청 예정 분야 인정기구에서 허용하는 숙련도 스킴의 검토 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 불참가 사유 자체개발한 시험방법인 경우,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토자료 | 수수료 해당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교정기관 측정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 | | 7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
| | 법인주소 | | |
| | 사업장 소재지 주소 | | |
| 신청자 | 성명 | 부서명 | |
| | 직위 |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신청분야 | 대분류 | 중분류 | 분류번호 |
| | 교정항목(교정유형) | 측정범위 | |
| | 교정·측정능력(신뢰수준 약 95%, $k = 2$) | |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5조 및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6조에 의거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인정기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